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상 색 초 등 학 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상색초등학교(이하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4. 「초 . 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32조
5.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으나, 학생은 본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상색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및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인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생활인권업무 담당자가 게시자에게 철거 사유를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회수한다.

제 8조【정보열람과 공개 청구의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5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학생은 정보의 오류 발생 시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학생의 사생활 보호】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에 힘쓴다.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제한한다.

③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10조【학생의 체벌 금지】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언어폭력
⑤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거나 동조하며 가담해서는 안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1.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책임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관할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3. 학교 폭력 신고 번호 117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경찰서, 담임교사나 생활 담당 교사, 교장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동조하여 가담한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양성평등】 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한다.

①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제18조【용의복장】

① 학생들은 두발 등의 용모 및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한다.

③ 학생은 스스로 단정한 두발 등의 용모, 복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9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학기 중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②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가 준비물 전달, 하교보호, 기타 상담으로 학교에 출입할 경우 행정실에 들러 방문증을 패용하고 교실에 입실할 수 있다.

제2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3조【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① 학교 등교 시 수업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수업 종료 후 전원을 켜도록 하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휴대 전화 사용이 꼭 필요할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의 규칙을 어길 시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보관 후, 당일 하교 시에 되돌려 준다.

제 4절 생활 및 인성 교육

제24조【안전교육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교한 학생은 수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교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단, 수업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 교사의 허락을 얻어 나가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제25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6조【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① 담임교사 및 학교 전체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상담 및 연수를 진행한다.
③ 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경찰.청소년 상담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④ 학교 폭력 사안 인지 시에 즉시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한다.
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제27조【자살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① 자기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관찰·상담 활동 등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8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①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 순찰을 통해 예방에 노력한다.
②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9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① 담임 훈화 및 관련 교과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찰 및 상담활동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3장 학생 생활교육 위원회

제1절 학생 생활 교육

제30조【학생 생활 교육】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31조【학생 생활 지도 단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고 (1단계)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② 교실 안 지도 및 상담 (2단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2차 경고 및 학부모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한다.

③ 학부모 상담 (3단계)

담임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교실 안, 지도만으로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여 상담한다.

④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4단계)

학부모 상담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면담한다.

⑤ 징계 (5단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경우 제3장 2절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2절 학생 생활 교육위원회 운영

제3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7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교무부장, 인성진로부장, 학년팀장, 인성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교육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

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0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간사】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43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4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5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3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4	평가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6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7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0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1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1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4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재심의 신청】 학생과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③ 학교장은 제47조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재심 청구】

①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49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0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51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절 규정의 개정

제54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자치

제55조【학생자치활동】 본교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한다.

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생활인권규정 제56조~제58조에 별도 조항을 두어 정한다.

제56조【조직】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명(6학년)

② 학생자치회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제57조【임기 및 출마 조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① 당해 학년도에 본교 재학 중인 6학년, 5학년 학생이 출마할 수 있다.

② 한 학기 동안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 후 다음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③ 2학기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 이전 학생 자치회 임원에게 재임 의사를 확인 후 학생들에게 재임 찬성 여부를 투표하도록 한다.

제58조【운영 및 역할】

① 회장과 부회장은 3, 4, 5, 6학년 전체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동점일 경우 재투표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회 회장은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교장 및 담당교사와 면담을 가질 수 있다.
④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⑤ 학생자치회 주도로 학기에 2번 이상의 학생자치회 회의를 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하여 회의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장 시상

제59조【시상의 종류와 방법】 시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별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6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 ·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임원이 학생 대표로 위원회 위원 자격을 얻는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공고를 통하여 위원 희망자를 신청받고 학부모회의 추천을 통해 학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6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개정안 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⑤ 학교장

제63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5조【공포 및 정보공시】 개정된 규정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6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